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0 | 2025.06.30 (2025.06.23~2025.06.2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①발생요건, ②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③발생 범위, ④공시 시스템, ⑤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해체 기간은 약 12년, 해체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시행령 기준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 확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추가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및 준수사항 등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중소형원자력과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천하람의원 등 10인)**」,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1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의원 등 10인)**」,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1인)**」,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1인)**」,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 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 <교육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및 <예결위>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발표(금융위원회) 7
-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원자력안전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12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0인)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1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18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19
-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 천하람의원 등 10인) 19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 · 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1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2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2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5인) 22
-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3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6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7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7
•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8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형사] 해외부패방지법(FCPA) 조사 및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와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 고려사항
-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재매입 옵션(buy back option) 제한 법안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
-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6. 11. - 2025. 6. 2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발표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 -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2025-06-26
-------	--	------------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음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제23조)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①발생요건, ②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③발생 범위, ④공시 시스템, ⑤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음

①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23①). “인·허가 등”은 사업자의 신청행위와 금융위원회의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인가, 허가, 승인을 포함함. 한편,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음

② 존속기한 산정 절차·기준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함

- **(사업자 신청)** 혁신사업자는 인허가 등의 신청과 함께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전담소위)** 신청이 접수되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로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차적으로 산정
- **(혁신위)** 전담 소위원회의 1차 산정 결과 및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존속기한에 관련된 심의를 진행. 심의 결과, 혁신위가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
- **(금융위)** 존속기한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인·허가 등결정과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

③ 배타적 운영권 발생 범위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할 수 있음

④ 공시 시스템 구축

금융시장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됨.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받은 업체 현황·서비스 내용·존속 기한 등이 공시될 예정임

⑤ 침해 및 보호조치 요구

- **(사업자의 조치 요구)**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전담소위)** 조치요구 접수 후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 여부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1차 심의
- **(혁신위)** 전담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관련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
-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업체에 통지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예정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 해체 기간 약 12년, 해체 비용 총 1조 713억 원
-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심층 점검
- 국민 안심하도록 해체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2025-06-2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음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 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하였음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한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하였음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체조직·절차)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 수행 예정

* 2025. 6월 현재 약 110여 명 수준으로 운영 중(사업소 70여 명, 본사 등 40여 명)

(해체 방법)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며,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

(해체폐기물 관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약 17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약 16만 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할 계획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절단, 제염 등 수행 (해체 승인 후 6년 이내 건설 예정)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재 고리 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 예정

(사고분석)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와 2.1%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

* 종사자 최대 피폭선량 16.9mSv(선량한도 50mSv), 일반인 최대 피폭선량 0.021mSv(선량한도 1mSv)

(해체 비용) 해체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 대응 방안 제시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울러,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25 시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25 시행
-------	-------------------	---------------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25 시행
-------	----------------------------------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서면동의 외에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동의 요건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토지등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23. ~2025.08.04.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시행령 기준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5 제2호 중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 기준 삭제

-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정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서는 해당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허용높이를 규정하고 있어 지형 및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법률에서 허용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삭제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용높이를 보장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국방부 시설기획과](#) (전화: 02-748-5845, 팩스: 02-748-581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26. ~2025.08.05.
---------	----------------------------------	-----------------------------

국회에서는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하고, 농업의 범위를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한편, 농촌 청년창업 간담회, 전문가 회의, 연구용역 등에서는 농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함에 따라 법률 제19조의4에서 위임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주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주사업 범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추가 (제20조의5제1항제1호)

- ②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서비스의 생산 공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가 (제20조의5제1항제2호)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전화: 044-201-1537, 팩스: 044-868-0129\)](tel:044-201-1537)

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25.
~2025.08.04.

현행법령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중 하나로서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방식이 화물에 압력을 가해 누출된 기체의 폭발 흔적을 탐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실제로도 해당 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방식 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보안사고 은폐·축소·조작·변조의 경우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부재하여, 항공보안종사자 중 현장 감독자 또는 책임자가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사고유발자가 직접 사고를 은폐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공보안사고 은폐·축소·조작·변조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전화: 044-201-4339, 팩스: 044-201-5626\)](tel:044-201-4339)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23.
~2025.08.04.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조합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합원의 세대주·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탈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모집수요 부족으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합원을 총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을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하고, 근무·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기간과 관계없이 세대주 자격을 재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20, 팩스: 044-201-3359\)](tel:044-201-3320)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반면,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따라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본인전송요구 확대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추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본인전송요구에 대한 대리 행사의 경우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된 전송 방법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화: 02-2100-3172, 팩스: 02-2100-319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2025-06-27 발의
-------	--	---------------

현행법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조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을 때 변호인도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자와 변호인이 주고받은 의사 교환 내용 및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제출받거나 일시보관하는 등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귀결됨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시보관은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밀유지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반면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안 제83조 및 안 제127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2025-06-27 발의
-------	--	---------------

현재 가상자산은 디지털 거래의 지급 수단을 넘어 글로벌 핵심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이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를 승인한 이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가상자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 및 관련 업계는 이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왔음.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화되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등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형 ETF를 활용함으로써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등 견고한 자본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는 단순한 신규 투자상품 도입을 넘어 국내 ETF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 유치의 통로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0인)

2025-06-24 발의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포항·울산·광양·여수·서산·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안 제63조의4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025-06-25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타 문화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2025-06-26 발의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대로라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된 채, 미래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임

이제는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 첫째, 국가의 임무를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해야 하는데, 이는 단지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을 다시 세우는 국가 비전임. 둘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67개 법정기금이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 고급 인재 고용 확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 구조의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가 신산업을 발굴, 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점임.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함.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4인)

2025-06-26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5-06-24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케이티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보보호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45조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2인)

2025-06-25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 (안 제32조의5 등)

행정안전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2025-06-23 발의

우리나라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생활 속 이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체계에서 기술의 안전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의 지연으로 인한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의 차질에 대비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선제적 입법 대응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함. 모든 국민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의를 누리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 법·제도 체계의 선제적 정립이 필요함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및 준수사항, 자율주행 교통정보와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원회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의원 · 천하람의원 등 10인)

2025-06-23 발의

인류 생존을 위해 전 지구적 위협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 중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대표적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고려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어려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근본적 한계인 간헐성은 주로 화석연료 발전을 예비(Back-up) 발전원으로 보완하는데, 이 경우 상당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이에 국민 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또 다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이러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직면한 문제로서, 이들 국가에도 실효적 해결책인 원자력을 제공하면 인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발전원(發電源)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용량이 큰 대형원전으로, 이들 원전은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장기간 건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 전력망이 작은 국가의 도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임. 그 대신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모듈 기반으로 용량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탄력 운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스마트그리드 운영 등이 쉽고, 해수담수화 및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중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임.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형원자로와 그 활용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25-06-23 발의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 · 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음. 특히 광화문 · 종로 · 용산 등 집회 · 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음

전국 766만 소상공인 중 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517만 원, 전체 매출 손실 규모는 약 35조 원에 이룸. 평균 영업이익률 13.25%(소상공인실태조사)를 적용할 경우 총 영업이익 손실액이 약 4.6조 원으로 산정됐으며, 인건비 ·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짐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나, 2025년 추경 예산안과 중기부 지원 정책 어디에도 비상계엄 피해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음. 수백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생계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졌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이에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융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5-06-24 발의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 · 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 (안 제7조의5제1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25-06-25 발의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6-26 발의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 및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정비,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한 생산시설 재투자 및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확대하고,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관리권자의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리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5인)

2025-06-27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관련 체계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2025-06-25 발의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2025-06-24 발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5-06-24 발의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 (안 법률 제 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5-06-2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감축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바 있음

이에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을 감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4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5퍼센트 이상 감축하도록 변경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06-25 발의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동법 제14조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경우에 해고당한 파견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파견사업주가 지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음

이에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06-19 발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5-06-27 발의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파견·도급계약 등을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즉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주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산업현장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전형·비정규직·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5-06-26 발의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근로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관계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소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존립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노동3권의 행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명백히 남용되거나 일탈된 행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 및 제4조)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2025-06-23 발의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나목)

국토교통위원회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25-06-23 발의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매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9인)

2025-06-24 발의

교통에 관한 현행 법체계는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그리고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교통 관련 복지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교통 관련 법의 기초는 효율성에 근거한 차량소통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보다는 차량 위주, 접근성보다는 이동성, 효율적인 시설관리보다는 건설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차량보다는 사람,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시설관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

이에 복잡 다원화된 교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교통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의 기본법으로 다른 교통관련 법의 방향을 제시하며, 총괄기능 조정 및 대응체계 개선 등 현행 법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06-24 발의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준현의원 등 50인)

2025-06-24 발의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기업, 경제 및 사회문화적 인프라 등 국가중추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십년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2005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 이전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서며, 경제적 집중과 의료 및 문화시설 등의 불균형 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유례없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에 두고 수도권은 인구, 경제, 국가기능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 저하, 저출생 및 고령화 심화, 재정부담 증가 및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하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임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정책 품질 저하 등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소모하는 시간과 예산은 국가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6/30(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등
	예결산소위	6/30(월) 14:00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교육위	전체회의	7/2(수)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6/30(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7/1(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산자위	예결산소위	6/30(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복지위	전체회의	7/1(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환노위	예결산소위	6/30(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6/30(월) 소위 산회 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	6/30(월) 10:00	- 간사 선임의 건, 추경 공청회 생략의 건, 추경예산안등조정 소위 구성의 건 ※ 종합정책질의(1일)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30(월) 09:30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 :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	임오경·박정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6/30(월) 14:00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위상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30(월) 15:30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한정애·정희용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화) 14:00	고영향 AI 및 Agentic AI 시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	최수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수) 10:00	Physical 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 '국회 AI 포럼' 세미나	이인선·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3(목) 14:00	변혁의 AI시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전환과 과제	조승래·안철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3(목) 15:00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보건, 한국의 역할	이재정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6/30(월)	「팩트북」 제117호 발간	국회도서관	
	7/2(수)	「Data&Law」 제31호(2025-6호) 발간		
	7/2(수)	「금주의 서평」 제735호(2025-26호) 발간		
	7/2(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3호(2025-13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23(월)	「Data+」 제12호(2025-12호)	국회도서관	
	6/25(수)	「금주의 서평」 제734호(2025-25호)		
	6/27(금)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4호(2025-11호)		
	6/24(화)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6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23(월)	형사	해외부패방지법(FCPA) 조사 및 집행 가이드라인 발표와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적 고려사항
6/24(화)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6/24(화)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자 재매입 옵션(buy back option) 제한 법안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
6/24(화)	소송	형사 무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제재처분, 항소심에서 취소되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승소 사례
6/24(화)	국제상사중재	중재에서 AI 활용 관련 유의점
6/27(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6. 11. - 2025. 6. 24.)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